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886
----------	------

제안연월일 : 2025년 6월 1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5년 5월 25일 김영옥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2765)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조문을 추가로 재정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2765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으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의 2를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1조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본조례의 근거법령인 “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1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수정함(2조의 2).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3. (현행과 같음)